

# 「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」 제정

## □ 제정 목적

-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상수도공사의 시설물별 표준적인 시공기준\*을 정하기 위함

\* 「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」는 '90년 최초 제정된 후 3차 개정('98, '07, '14)한 바 있으며,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 도입 및 제정방식 변경(책자→고시)에 따라 기준체계 코드化 및 고시 제정을 추진하게 됨

## □ 추진경과

-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코드화 용역('16.6.10~12.9, 한국상하수도협회)
- 국가건설기준센터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('16.12월)
-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('17.2~'17.3월)
- 심의의견 보완('17.4~'17.6월) 및 국조실 규제심사('17.7월)

## □ 주요 제정내용 (\* 기존 책자형식의 표준시방서 대비 변경사항)

- 시설물별 시공기준에 대한 코드化 도입 (예. 1 1.1 1.1.1 → KCS 57 10 05)
- 상수도 현장조사(KCS 57 10 20), 밀폐공간 보건작업(KCS 57 10 25), 해수 취수시설 설치공사(KCS 57 20 25) 등 3개 항목 신설
- 용어 현행화 등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